



#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

류건식 선임연구위원, 김동겸 선임연구위원

## 요약

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립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. 퇴직연금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조치는 의무적립비율, 적립금 과부족 관련 이행조치,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. 우리나라 건전성 규제조치가 국제적 권고기준에 미흡하여 근로자 수급권이 건전성 측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. 현재 의무적립비율은 적립금 적정수준의 70%에 불과하여 30% 적립부족 상태에 있음.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적립액 평가 및 퇴직연금 부족 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의 적기 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.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, 최소적립금 수준을 조속히 100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, 둘째,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기준에 미달 시 추가부담금을 조기에 확보하고, 마지막으로 적기시정조치 위반 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.

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조치<sup>1)</sup>에도 불구하고 적립부족 상황에 처해 있음.

- 퇴직연금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조치는 의무적립비율, 적립금 과부족 관련 이행조치, 미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함.

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부족상태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.

-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최소적립비율이 연금부채의 100%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, 우리나라는 70%에 불과함.
-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인 기업이 도산할 경우 30%의 적립부족(미적립채무)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.

1) 정부는 2014년 8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DB형 최소 사외적립비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%로 인상하는 한편, 일반금융상품과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한도(5천만 원)를 설정함.

〈표 1〉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관련 규제

구분	한국	외국	
		미국	일본
최소 적립 비율 (의무적립비율)	70% · 2020년까지 100% 상향	90%에서 100%로 상향조정 · 2006년 이후부터 적용	100%
특징	미적립채무 30% 존재	부담금 완전 사외적립(미적립채무 없음)	

자료: 일본 기업연금법(2014); 미국 ERISA법(2014) 참조.

■ 또한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으로 DB형 퇴직연금의 건전성 검증기준(적기시정조치)이 마련되었지만, 적립과부족 시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.

- 반면, 미국 등은 세제혜택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립 최고한도를 설정하거나,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시 벌과금 부여, 급여 삭감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.

〈표 2〉 퇴직연금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제

구분	한국	외국	
		미국	일본
적립 부족 시	- 최소적립금의 95%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·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제출	- 최소적립금의 90%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· 부족분 5년 내 납입	- 최소적립금의 90%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· 부족분 7년 내 납입
적립 초과 시	- 향후 부담금과 상계 처리	상계 처리 인정	
	- 연금부채의 50% 초과 시 반환가능 적립최고한도 미설정	- 부채초과금 반환가능 적립최고한도 설정(세제혜택을 이용한 조세회피 고려)	- 부채초과금 반환가능
제재조치	없음	존재(세금 등 벌과금 부여, 적립부족 심각 시 급여삭감 등)	

자료: 일본 기업연금법(2014); 미국 ERISA법(2014) 참조.

■ 따라서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최소적립금 수준을 100%로 조속히 상향 조정해 적립부족분(미적립채무)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또한, 적립금이 최소적립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(적립부족 시), 추가부담금을 조기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, 과도한 적립초과현상 해소를 위해 최대적립한도 설정과 같은 장치마련도 요구됨.
- 이와 더불어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조치(벌과금 부여 등)를 취해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 [kiri](#)